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8. 14 선고 2019가단4502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재단법인 C

변론 종결 2020. 7. 24.

판결 선고 2020. 8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4,856,557원 및 그 중 42,138,740원에 대하여 2018. 7. 1.부터 2019. 10. 8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사실

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,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.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4,856,557원 및 그 중 42,138,740원에 대하여 2018. 7. 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9. 10. 8.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안전부의 D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글로벌 문화교류 및 해외의료봉사협력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부당한 국고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았고, 원고는 위 환수처분에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피고와 협의하지 않았으므로,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피고가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피고가 제출한 자료는 증거로 삼을 수 없어(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다15775 판결 참조)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,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범준

별지